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6호 2022. 2. 7.(월요일)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16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2-17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
- 하동군 고시 제2022-1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22-19호 2022년도 하천골재 채취 점용료 조정 알림..... 7
- 하동군 고시 제2022-20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8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5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10
- 하동군 공고 제2022-163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7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7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행정예고.....30
- 하동군 공고 제2022-187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33

회									
람									



하동군 고시 제2022-16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 01. 26.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상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1447	35-13-08.25459	127-52-53.23778	중부	291742.850	280252.539	82.985	옥중면 중화리 208-1	2022.01.12	표철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2622	35-12-37.12449	127-46-48.75649	중부	290244.849	270552.259	268.773	청암면 상이리 1982	2022.01.05	표철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3	35-02-02.64914	127-47-17.31465	중부	271158.520	271919.074	36.075	고전면 신월리 1495-3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4	35-01-57.38463	127-47-18.46644	중부	270996.509	271949.552	36.319	고전면 신월리 산119-2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5	35-01-54.68942	127-47-15.29190	중부	270912.813	271869.737	37.946	고전면 신월리 산119-2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6	35-01-45.21956	127-47-12.44548	중부	270620.402	271799.884	41.528	고전면 신월리 1233-5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7	35-01-43.02119	127-47-15.46805	중부	270553.257	271877.040	40.707	고전면 신월리 산125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8	35-01-43.18609	127-47-29.88223	중부	270561.230	272242.396	36.286	고전면 신월리 348-4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59	35-01-39.56663	127-47-28.10747	중부	270449.328	272198.291	34.584	고전면 신월리 320-2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0	35-01-35.62032	127-47-25.83946	중부	270327.256	272141.759	31.676	고전면 신월리 323-6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1	35-01-36.52935	127-47-14.41242	중부	270352.981	271851.858	29.621	고전면 신월리 325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2	35-01-37.12252	127-47-06.90441	중부	270369.762	271661.383	29.671	고전면 신월리 1292-1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3	35-01-46.90406	127-47-43.60317	중부	270678.575	272589.306	57.310	고전면 신월리 1469 번지(20번지인근)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4	35-01-48.21864	127-47-47.46639	중부	270719.869	272686.914	65.669	고전면 신월리 산152-1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5	35-01-47.36711	127-47-52.88295	중부	270694.723	272824.430	77.944	고전면 신월리 17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6	35-03-06.28560	127-49-25.13990	중부	273145.842	275143.022	107.734	고전면 성천리 산46-7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7	35-03-04.24942	127-49-29.05734	중부	273083.911	275242.819	120.159	고전면 성천리 산46-7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8	35-03-01.03370	127-49-31.64049	중부	272985.350	275309.104	116.974	양보면 장암리 산163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69	35-03-01.02030	127-49-36.49869	중부	272985.956	275432.230	105.040	양보면 장암리 1014 번지(357번지인근)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0	35-03-01.88007	127-49-42.96723	중부	273013.813	275595.943	96.006	양보면 장암리 362-1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1	35-02-59.66716	127-49-49.94962	중부	272947.087	275773.467	89.209	양보면 장암리 367-3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2	35-02-59.36961	127-49-56.77313	중부	272939.358	275946.474	74.624	양보면 장암리 388-2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3	35-03-03.18140	127-50-02.06353	중부	273057.950	276079.568	69.212	양보면 장암리 308 번지	2022.01.07	맨홀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4	35-01-13.95708	127-49-51.58422	중부	269689.646	275842.020	37.353	고전면 고하리 725-1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5	35-01-02.77253	127-49-44.21197	중부	269343.406	275657.977	36.610	고전면 고하리 743-11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6	35-00-57.43739	127-49-41.98659	중부	269178.519	275602.921	36.084	고전면 고하리 741 번지(745-8번지인근)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7	35-00-44.23844	127-49-44.94712	중부	268772.377	275681.359	35.515	고전면 고하리 741 번지(749-10번지인근)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8	35-00-37.13183	127-49-43.73949	중부	268553.111	275652.557	35.228	고전면 고하리 755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79	35-00-22.85029	127-49-43.07567	중부	268112.843	275639.378	35.478	고전면 고하리 735 번지	2022.01.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80	35-13-09.95085	127-52-51.47554	중부	291794.732	280207.507	83.633	옥중면 중화리 248-1	2022.01.12	맨홀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3781	35-13-10.71862	127-52-50.49448	중부	291818.174	280182.485	84.614	옥중면 중화리 250-9	2022.01.12	맨홀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하동군 고시 제2022-17호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 하 동 군 수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일반(생활)폐기물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하 동 군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금회변경)
  - 가. 폐기물처리시설 : 102,738㎡

구 분	변경전	변경후
폐기물 소각시설	30톤/일, 여열회수시설 포함	60톤/일, 여열회수시설 포함
매립시설	38,880㎡ (매립용량 225,000㎡ 이상)	14,700㎡ (매립용량 136,800㎡ 이상)
재활용 선별시설	10톤/일	10톤/일
기타시설	60,581㎡ (관리동, 조경시설, 원형녹지 등)	71,937.4㎡ (관리동, 조경시설, 원형녹지 등)

-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 하동군 전지역
-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변동없음)
  - 가. 위치 :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8-1번지 일원
  - 나. 지번 및 지목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시군	면	리	지번					
1	하동	금성면	가덕	산37	임	33,656	1,457	사유지	
2	하동	금성면	가덕	산38-3	임	5,302	809	사유지	
3	하동	금성면	가덕	산38-7	임	5,310	170	사유지	
4	하동	금성면	가덕	산45-8	임	26,947	1,772	사유지	
5	하동	금성면	가덕	산45-13	임	6,612	636	사유지	
6	하동	금성면	가덕	산45-14	임	6,612	577	사유지	
7	하동	금성면	가덕	298-1	유	86,260	86,260	국유지	
8	하동	금성면	가덕	298-2	제	6,650	6,650	국유지	
9	하동	금성면	가덕	298-3	구	976	476	국유지	
10	하동	금성면	가덕	298-12	유	437	437	국유지	
11	하동	금성면	가덕	298-13	제	3,502	3,494	국유지	
소 계						182,264	102,738		

5.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 명칭 :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폐기물처리시설 97,32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환경보호과)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

6. 열람기간 : 2022. 1. 26. 09:00 ~ 2. 24. 18:00(1개월)

7. 열람사항 : 입지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8. 열람장소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055-880-2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1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 26.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7호
2. 허가연월일 : 2022. 1. 26.
3. 점·사용의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이용 콘크리트포장, 전석쌓기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012-1번지, 8㎡
5. 점·사용의 기간 : 2022. 02. 02. ~ 2032. 02. 0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 정재\*

하동군 고시 제 2022-19호

## 하천골재 채취료 조정내역 고시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의거 2022년도 하천골재 채취료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하 동 군 수

□ 2022년 하천골재 채취료 조정

(단위 : 원/m<sup>3</sup>)

구분	2022년 골재채취료			
	모래	자갈	막자갈	비고
조정액	2,060	2,040	1,630	전년과 동일

하동군 고시 제2022 - 20호

##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28.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하촌길 48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8-3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693-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하촌길 48	20220128		20070618	하촌이라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9-19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279	20220128		20070618	신기마을과 공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9-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277	20220128		20070618	신기마을과 공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100-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오산길 796	20220128		20090302	금오산의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38-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단천길 139	20220128		20070618	박달나무가 많은 시냇가 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628-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181	20220128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741-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116	20220128		20070618	연꽃을 상징하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328-4, 서황리 산207-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길 227	20220128		20090302	뒷산의 생김새가 뒤달방아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8-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8-3	20220128		20080402	하동을 지키는 관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8-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8-5	20110729		20080402	하동을 지키는 관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22-158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던 연대 보증제도를 일반 보증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대신에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연대보증제도를 보증제도로 전환(인감증명서 삭제)  
(별지3호 서식)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 → 보증인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
  - 재정보증서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추가  
※ 2019.5.2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 사항
  - 장학생 지급 대상자의 친권자 및 가족에 대한 '직업' 기재란 삭제  
(별지 7호서식)
  - 한자어 등 용어정비
    - 장학생 지원자격 중 성적에 대한 사항 중 '3할'을 '30퍼센트'로 변경
    -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재적학교 → 학교명
    - (별지1) 학교장 추천서 1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1부
    - (별지7) 선발당시 학교 성적 평균 점(석차 / )  
→ 선발당시 학교 성적 석차비율 퍼센트(석차 / )
    - (별지7) 기관(계 단위까지) → 기관
    - (별지7) 적요 → 주요내용
  - 기타 불필요한 별지 서식 정비(별지7)
  -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기안문 형태 현행화 (별지4, 별지8~10)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행정과(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53, FAX 880-2159, e-mail : hur4444@korea.kr)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하동군 홈페이지, 하동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

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9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의 학교장은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현주소		
학교명	( 전공과목 :	학 (교)      학과      학년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하동군수    귀하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장 학 생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 권 자 대 리 인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  
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①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②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 ○○학교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학교명	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	증 서 번 호 :	기타사항	
	증서수여일자 :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 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5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장 학 증 서

○○ 학(교)    ○○학과    제○학년  
성    명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  
되어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 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장 학 생		신 청 액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기 타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	------------	------	--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주소	세대주
1.	

2.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 기타특기사항
	3.						

3. 재정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4. 관리기록

지원 ~선발	학 교 명	학 년		전 공 학 과		
	지원일자	선발일자		선발 당시 학교성적		
				석차비율 퍼센트(석차 / )		
장학금 지 급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년 월 일	주요내용	년 월 일	주요내용

6. 임용상황

임 용				임 용 대 기	임 용 포 기
일 자	계 급	직 렬	기 관	(사유)	(사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지급총액	
------	--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별지 제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 ○○지방자치단체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재 학생 본인		지 일 급 시	지 급 액				수령인	비 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9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 ○○지방자치단체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분기말) 성적 통보

####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 명	학 과	학 년	비 고

#### 2. ( ) 년 ( ) 학기 ( 분기 ) 말 성적

성 적 사 항				출 석 사 항	
과 목	성 적	과 목	성 적	구 분	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상별사항 등)	
석차비율		석 차	/		

발 신 명 직위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10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 ○○지방자치단체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 1.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학 과	학 년	비 고

####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발 신 명 위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 2022-163호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월 25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사항 정비 및 수소관련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특례 근거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가. 공유재산 임대가능 구역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확대
  - 나. 공유재산의 임대 사용·수익 및 대부에 대한 사항 명시
  - 다. 임대특례 대상 범위 확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2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단, 전화 055-880-7114, FAX 055-880-7119, e-mail antares0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조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대송산업단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후단”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받”을 “수익계약으로 대부를 할수 있”으로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한다.

제29조의2 중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소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자가”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2 - 177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 하 동 군 수

1. 목 적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 해제하기 위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2. 1. 26. ~ 2. 14.(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2. 1. 26. ~ 2. 14.(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해제사유	비고
		유역면적 (ha)	유효저수량 (천m <sup>3</sup> )	제당높이 (m)			
대방골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63-1	24.0	12.54	0.6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마량	경남 하동군 고전면 상평리 232-1	65.0	2.94	3.0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남 하동군 읍내리 군청로 23 건설교통과
- 전 화 : 055) 880-2514
- 팩 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주 민 의 건 제 출 서

공 고 명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저 수 지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하동군수 귀하



###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2-187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 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27일

###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공은숙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04
소하천명		상덕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4(하천)(인접 : 덕은리 817-20)		
	면적	65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22. 01. 25. ~ 2027. 01. 24.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